

제285회 임시회
성 북 구 의 회

의안
번호 제391호

**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
관한 조례 제정(안) 검토보고서**



행정기획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(안) 검 토 보 고 서

행정기획위원회

전문위원 이 병 곤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 391 호
- 제 출 자 : 김우섭 의원 외 12인
- 제 출 일 : 2021. 10. 7.
- 회 부 일 : 2021. 10. 8.

2. 제안이유

가스 사용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자이거나 치매환자, 소년·소녀 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에 화재예방을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(안 제1조~안 제2조)

- 안 제1조(목적) : 성북구민을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을 보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
- 안 제2조(정의) : 가스타이머 콕¹⁾, 사업자²⁾

1)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

2)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른 가스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

나. 지원대상,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(안 제3조~안 제4조)

○ 안 제3조(지원대상)

-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독거노인 · 고령자, 장애인, 치매환자, 소년 · 소녀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, 경로당

다. 지원내용, 보조금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(안 제5조~안 제6조)

○ 안 제5조(지원내용)

- 1세대 1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100분의 80까지 지원

라. 검사 및 감독, 환수조치, 준용에 관한 규정(안 제7조~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제1조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○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6조제1항

제46조(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

5. 가스사고 현황³⁾

가. 사고발생 경향

구분		계	‘11년	‘12년	‘13년	‘14년	‘15년	‘16년	‘17년	‘18년	‘19년	‘20년
사고건수 (인명피해)		107 (465)	11 (89)	18 (89)	11 (56)	15 (62)	11 (30)	6 (38)	11 (28)	7 (21)	8 (22)	9 (30)
LP 가스	계	62	5	9	4	10	6	5	8	3	7	5
	시설	42	2	6	4	5	1	5	6	2	6	5
	부탄	20	3	3	-	5	5	-	2	1	1	-
도시가스		29	5	6	4	3	2	1	3	3	-	2
고압가스		16	1	3	3	2	3	-	-	1	1	2

※ 최근 10년간 중대 가스사고는 107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 465명(사망 121명)

나. 가스사고 세부원인 분석 (() = 사망)

구분	계	‘11년	‘12년	‘13년	‘14년	‘15년	‘16년	‘17년	‘18년	‘19년	‘20년
계	465 (121)	89	89	56	62	30	38	28	21	22	30
중독	184 (54)	45	46	12	22	7	14	14	17	3	4
폭발	179 (40)	28	39	35	17	7	14	5	3	10	21
파열	65 (3)	16	-	1	23	11	1	5	-	8	-
화재	19 (8)		2	-	-	-	9	4	-	1	3
산소 결핍	17 (15)		2	8	-	5	-	-	-	-	2
누출	1 (1)		-	-	-	-	-	-	1	-	-

※ 인명피해 465명의 주요 원인은 중독사고(39.6%) 및 폭발사고(38.5%)로 전체 사고의 78%

3) 2020 가스사고 연감

6. 검토의견

가스사용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현재 성동구 등 7개의 자치구가 시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, 향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상자 선정과 사후 관리 및 예산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또한,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점검과 교육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